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포츠클럽 및 파해지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7.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 2023. 7. |
|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황국주 의원 등 6명
- 발의일자: 2023. 7. 7.(금)
- 회부일자: 2023. 7. 7.(금)
- 검토기간: 2023. 7. 10.(월) ~ 7. 14.(금)

2. 제정이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달서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스토킹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스토킹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달서구의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2018년 6월 1일 별도 코드가 신설된 이후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이었으나, 2021년 1만 4,509건, 2022년 2만 9,56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2023년 1월 17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7월 18일 시행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스토킹범죄는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¹⁾,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이 필요함.
- 이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 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와 6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으로 정책 시행의 필요성과 실효성 또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1) 경찰청(2020년 10월 19일)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보복범죄는 434건으로 2020년 298건보다 136건(46%) 증가했다. 보복범죄는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9월 현재 281건이 발생했다. 보복범죄 유형은 협박(600건),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 등이 있다.

관계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시행)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7.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